대전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52호

- 2026년 제10회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임기제공무원 -
(지방학예연구사, 임상병리사, 불법주정차 단속)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1월 23일

대전광역시중구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임용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지방학예연구사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 주 40시간	효문화마을 관리사업소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 주 20시간	주차관리과
임상병리사	한시임기제 9호	1명	임용일로부터 27.12.31.까지 / 주 35시간	보건소 건강정책과

* 근무 기간은 연장필요 시, 근무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Ⅱ 임용 대상 직무내용

임용분야	주요 업무
지방학예연구사	○ 한국족보박물관 특별전 기획 및 시행 ○ 한국족보박물관 유물 수집 및 보존 관리 ○ 한국족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운영 ○ 한국족보박물관 관리, 운영 및 홍보 등 ○ 한국 족보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및 대외 협력 사업 ○ 문중 행사 유치 및 지원 등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 한국족보박물관 자료 관련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등

임용분야	주요 업무
불법주정차 단속	○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취약지역 집중 계도(홍보) 및 단속 ○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 처리 및 민원 상담
임상병리사	○ 검사실 운영(병리검사 및 시약·장비 관리 등) ○ 감염병·식품매개 질환 발생 시 검체 채취 업무 지원 ○ 행정·예산업무 등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III 근거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운영지침
○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IV 응시자격 요건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 / 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성 별)**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 **(거 주 지)**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자

※ 단, 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의 경우,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 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바. 삭제

사.「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 자격요건

임용분야	자격기준
지방학예연구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학예사 자격증(2급 정학예사 이상)을 소지하고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박물관에서 박물관 관련 연구 또는 근무 경력 ※ 관련분야 학위 : 국어국문학,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서지학 등

임용분야	자격기준
불법주정차 단속	○ 현장단속업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 **새벽·야간·토요일·휴일에도 단속 업무가 가능**하고 ○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하며,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기업에서 교통 업무(교통단속,교통행정 등) 근무 경력(단, 운전경력 제외)
임상병리사	○ **「의료기사법」에 따른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한 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공무원경력)** ○급 또는 ○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 ○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고등학교 졸업 후) ○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일반임기제는 3년, 시선제 및 한시임기제는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일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 명시

Ⅴ 근무조건 및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임용분야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비고
지방학예 연구사	○ 주 40시간 / 중식시간 제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및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임용구분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하한액의 120%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불법 주정차 단속	○ 주 20시간 / 중식시간 제외 *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격일제 1일 8시간 원칙으로 하며, 근무 방법·시간은 명령에 의거 조정 가능 ○ **연봉 17,771천 원**	
임상병리사	○ 주 35시간 / 중식시간 제외 ○ **월 봉급액 2,053,010원**	

*「고용보험법」제10조(적용제외)제1항제3호 및「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2(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Ⅵ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임용 예정 직위에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참고

□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인성・공직관・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평정 요소)**

평정 요소	❶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❷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❹ 예의.품행 및 성실성 ❺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합격자 선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응시자 중에서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불합격 기준	■ 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 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

※ 다만, 동순위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Ⅶ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 시험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12. 4.(금) ~ 12. 8.(화) / 3일간	12. 11.(금) / 예정	12. 16.(수) ~ 12. 17.(목) / 예정		12. 21.(월) /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중구청 홈페이지 - 채용공고" 에 게시

Ⅷ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관련 서식 게시

○ **(접수기간)** 2026. 12. 4.(금) ~ 12. 8.(화) 09:00~18:00

* 토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대전광역시 중구청(2층) 행정지원과 인사팀

○ **(접수방법)**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우체국 익일특급) 접수

- 주소: (3493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우편 접수 시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 기준**이며 **반드시 연락 요망 (☎042-606-6193)**

※ **우편 접수 시 응시 수수료(나급, 다급(6급, 7급) 7,000원 / 라급, 마급(8급, 9급) 5,000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제출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워드작성 가능하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자필 서명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1호)

- 응시수수료 : 대전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및 나급, 다급(6급, 7급) 7,000원 / 라급, 마급(8급, 9급)5,000원 첩부

※ 중구청 1층 종합민원실(본관1층) 18번 창구에서 구입

○ 이력서 1부(별지서식 2호)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3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4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6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별지서식 7호)

○ 직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 원서접수 시 원본 지참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 기간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 대표자 직인, 증명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본인이 지원하는 임용분야 자격요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 자격요건 내용이 기재 안될 경우에는 「별지서식 8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 시간 명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 이상 졸업자는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자격증, 상훈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의 국문요지 첨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작성 금지

Ⅸ 유의 및 기타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또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등을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 및 합격 부적절한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변경 사항은 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의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등은 향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예산 사정에 따라 채용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 (채용관련)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지원과 인사팀(☎606-6193)
- (직무관련)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관리과(☎606-6881)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건강정책과(☎288-8031)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288-8211)

붙임 직무 기술서 각 1부.

직무 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지방학예연구사	일반임기제(6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주요 업무	○ 한국족보박물관 학예 연구 및 법적 사무 이행 총괄 ○ 한국족보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연구 총괄 ○ 한국족보박물관 특별전 및 교육 기획, 홍보 총괄 ○ 한국족보박물관 위원회 운영 및 문중 협력, 공모사업 관리 ○ 한국 족보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및 대외 협력 사업 등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및 공직가치,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기획력, 디지털 활용 능력 ○ **(직급별 역량)** 조직 및 갈등 관리, 업무 수행의 정확성 및 성실성 ○ **(직렬별 역량)** 전문지식, 분석능력, 조사연구, 보존관리, 활용기획

필요 지식	○ 박물관 학예 연구 업무 및 관련 법령, 제도 이해 ○ 족보 및 문중 관련 자료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관한 전문지식 ○ 박물관 소장 유물의 수집·등록·분류 및 보존·관리 지식 ○ 족보 관련 특별전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콘텐츠 개발·운영 능력 ○ 문중·세계기록유산 관련 단체·족보 관련 기관 간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등 ○ 박물관 홈페이지 관리, 홍보 등 기본 행정 역량 및 대민 소통 능력

응시자격	**관련분야: 지방학예연구사**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학예사 자격증(2급 정학예사 이상)을 소지하고 다음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국어국문학,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서지학 등**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박물관에서 박물관 관련 연구 또는 근무 경력 **※ 실무경력은 최종경력 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직무 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불법 주·정차 단속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관리과

주요 업무	○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취약지역 집중 계도(홍보) 및 단속 ○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 처리 및 민원상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투철한 책임감

응시 자격	**공통**	**관련분야: 불법 주·정차 단속**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연 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 받은 자)
	직무분야	○ 현장단속업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 **<u>새벽·야간·토요일·휴일에도 단속업무가 가능</u>**하고 ○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하며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교통업무(교통단속, 교통행정 등) 근무 경력(운전경력 제외) **※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를 명시한 경우에 한함.**

직무 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상병리사	한시임기제 9호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정책과

주요 업무	○ 검사실 운영(병리검사 및 시약·장비 관리 등) ○ 감염병·식품매개 질환 발생 시 검체 채취 업무 지원 ○ 행정·예산업무 등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전략적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환경변화 분석력 등
필요 지식	○ 임상병리 검사 수행을 위한 검사 관련 지식 ○ 진단검사의학 등 검사 분야별 전문 지식 ○ 혈액, 체액 등 검체 채취·관리 및 처리에 관한 지식 ○ 검사장비 운영 및 정도관리에 관한 지식 ○ 예산업무, 문서작성 등 실무 행정에 관한 지식
응시자격	**관련분야 : 임상병리사**
	○ **「의료기사법」에 따른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